
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- 430호

「광업법」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한 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를 폐문·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6. 12.

산업통상부장관

1. 공고사유 : 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6.6.12.~6.27(15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사건번호	사건명	청구인	피청구인	송달서류	비고
1	제2026-102호	광업권 취소처분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	이*수	광업등록 사무소장	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	
2	제2026-103호	광업권 취소처분 유예에 대한 이의신청	이*수	광업등록 사무소장	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	

4. 문의처 :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(광물자원팀)
(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, 044-203-5256, leejunbok@korea.kr)
5. 공고내용 : 위 청구인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폐문·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 하오니 위 청구인은 산업통상부 광업조정 위원회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끝.